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속가능경영의 촉진 및 평가: 방위산업발전법〉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89호)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위사업법〉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90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방위산업 ESG 경영 현황	4
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방위산업발전법)	7
3. 지속가능경영의 촉진 및 평가(방위산업발전법)	10
4.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위사업법)	12
※ 참고자료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15

I. 제안경위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989호)

- 1) 발 의 자 : 백선희의원 등 13인
- 2) 발의연월일 : 2026. 2. 24.
- 3) 회부연월일 : 2026. 2. 25.

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990호)

- 1) 발 의 자 : 백선희의원 등 13인
- 2) 발의연월일 : 2026. 2. 24.
- 3) 회부연월일 : 2026.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989호)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990호)

현행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준수 여부가 수출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방위산업체의 경영 환경 선진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기술 중심 인센티브 조항을 포괄적인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9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방위산업 ESG 경영 현황

□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경영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¹⁾ 등 비재무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는 ESG 경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임.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제가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 기여와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비(非)재무적 성과 지표를 경영에 도입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

특히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을 도입하여 기업의 인권·환경 관련 실사의무를 자회사 및 사업관계자로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제를 법제화하고 있음.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

- (실사 분야) 인권 및 환경
- (EU 기업) 평균 근로자 5,000명 초과 및 전 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기업 등
- (역외기업) EU 역내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기업 등
- (실사 대상) 기업 자체, 자회사 및 활동망 내 사업관계자

1)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를 말함.

- (제재) 회원국은 실효적 · 비례적 · 억지력 있는 제재를 마련하되, 금전적 제재의 최대한도를 전 세계 순매출액의 3%로 설정
- (국내법 전환) 2028년 7월 26일까지
- (적용) 2029년 7월 26일부터

*출처: KOTRA, EU 공급망실사지침

또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 대상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

- 국내에서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 및 공시에 대응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정책, 평가 및 지원 등을 운영 중이며,²⁾ 금융위원회는 ESG 경영공시 제도화 추진 등 정책을 강화³⁾하고 있음.

방산분야는 제조업 기준의 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기업 위주로 관련 조직 운영 및 경영공시 중이며,⁴⁾ 중소기업의 경우 ESG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 여전히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적·환경친화적 경영을 도모하고, 해외 주

2) 산업부 K-ESG 가이드라인('21년~)은 방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제조업 중심으로 마련됨.

3)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단계적 공시('29년 10조원 이상)

4) 방산업체 84개사 중 21개사가 ESG 관련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개사만이 ESG 경영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요국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고 방산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같은 취지에서 발의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함께 검토함.

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방위산업발전법)

- 개정안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생략)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u>7의2.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⁵⁾ 이러한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발전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의 국내·외 동향,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6.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의 생산능력 판단에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간 정책 조정 및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방위산업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⁶⁾

특히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획득, 국방연구개발, 방산수출, 중소기업 육성, 공급망 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상호 연계된 분야이고, 최근 방산수출 확대와 K-방산 경쟁력 강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개정안은 ESG에 관한 사항이 방위산업 발전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방산수출 과정에서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국제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기존 항목 간 위계를 고려할 때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제7호의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세부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10조제2항제10호⁷⁾

관한 사항

7.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방위산업·국방연구개발·첨단전략산업과 같이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한 분야에서 기본계획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함.
- 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

에 근거한 사업으로 규정하는 방안으로도 개정안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제10조의 적용대상은 ‘국방중소·벤처기업’에 한정되므로, 해당 조항 또는 그 하위법령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대기업인 방산업체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개정안이 방산업체등 전반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 7.>

1. 창업활성화 및 경영 지원
2.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4.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5. 국방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6. 정보화 지원
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8.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9.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
10. 그 밖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지속가능경영의 촉진 및 평가(방위산업발전법)

-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등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특화 지속가능경영 기준 및 지표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경영 활동 우수한 방산업체등을 선정·포상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3(지속가능경영의 촉진 및 평가)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특화 지속가능경영 기준 및 지표의 개발·보급 2. 지속가능경영 도입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3. 지속가능경영 진단 및 수준 평가 4.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제 및 정책 대응 지원

	5. 그 밖에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 중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방산업체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

□ 방위산업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경영 기준·지표를 개발하고 기업의 대응역량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만으로는 대기업을 포함한 방산업체등 전반을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평가를 위한 세부사업 목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에 개정안의 내용을 제2항에 추가함으로써 개정의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임.⁸⁾

8) 국방부의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신설 의견 제12조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특화 지속가능경영 기준 및 지표의 개발·보급
2. 지속가능경영 도입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3. 지속가능경영 진단 및 수준 평가
4.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제 및 정책 대응 지원
5.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우수한 업체 선정 및 포상

그러나 법 제10조는 규율대상을 국방중소·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서 지원대상을 일반 방산업체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위임범위와의 관계에서도 검토가 필요함.

4.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위사업법)

- 개정안은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여 포상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 체결을 위한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6조의3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46조의3(방위사업계약 체결 시 인센티브)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

6. 그 밖에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u><신 설></u>	1. 계약목적물에 「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 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적용하는 경우
<u><신 설></u>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방산업체등으로 포상 받은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은 방위사업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9)에 따른 핵심 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 9)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2.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이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확보·활용하여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미래도전국방기술(未來挑戰國防技術)”이란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所要)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5. “국방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 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 나. 「방위사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 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 라.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 마. 「방위사업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규정하고 있음.¹⁰⁾

- 방산 분야의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등 정책적 유인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방위사업계약의 낙찰자 결정과 직접 연계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대응역량의 차이가 입찰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우선 지속가능경영 기준 마련과 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후 계약상 인센티브 도입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도 같은 취지에서 방위사업계약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센티브를 곧바로 도입하기보다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12

10) 「방위사업법」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부여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1. 근거: 「방위사업법」 제46조의3,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방위사업청훈령)

2. 인센티브 내용

-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 ‘비용평가(20점)’, ‘가·감점 평가(-5.3~+3.6점)’로 평가분야 구분
- 가·감점평가는 총 10개 항목으로, 가·감점은 각 5항목으로 구분되어 기술능력평가 및 비용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 총 2점(참여업체 수 1점, 참여규모 1점) 범위 내 점수 부과 가능
 - * 합정 연구개발 사업(만재톤수 5백톤 이하)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안업체로 참여하는 경우 추가로 1점을 가점하여 총배점 3점으로 한다.
 -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에 부과
 - * 기업규모별 증가율 기준(대 4%~6%, 중견 4%~7%, 중소 4%~10%), 배점(0.1~0.3점)
 - (공동투자 투자비율 가점) 참여기업 유형별 업체가 제시한 투자비율에 따라 최대 1점까지 부과
 -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신속시범사업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이 해당 사업 선정의 근거가 된 신속시범사업에 수요신청을 한 기관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제안업체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로 국기연으로부터 받은 상생협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0.3점 가점 부여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방위사업청훈령)]

제25조의4(가·감점 평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가·감점 평가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1. 중소기업 참여 가점 : [별표 11]에 따라 평가
 2.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 [별표 14]에 따라 평가
 3.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 [별표 15] 따라 평가
 4. 삭제
 5.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 [별표 18]에 따라 평가
 6.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 [별표 17]에 따라 평가
 7. 중소기업 참여 감점 : [별표 11]에 따라 평가
 8.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 [별표 12]에 따라 평가
 9.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 [별표 13]에 따라 평가
 10. 장기 채무 불이행 감점 : [별표 19]에 따라 평가
 11.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 제한 분량을 50페이지 미만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점수에서 0.1점 감점, 50페이지 이상으로 초과 시 종합점수에서 0.2점 감점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의 가·감점 평가점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제안서평가협의회의 확인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